

베 트 남

구체적 약속 양허표

(개방 약속 제1차 패키지)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I. 수평적 양허</b>			
약속안함*은 기술적 실행가능성의 부족으로 약속안함을 의미함.			
본 양허표에 포괄된 전 분야	<p>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p> <p>본 양허표의 구체적 개별 분야 또는 업종에 달리 명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기업은 베트남에 경영 협력계약<sup>1)</sup> 합작회사, 100% 외국인 투자회사 형태로 상업적 주재를 설립할 수 있음.</p> <p>외국의 서비스 공급자는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나 직접적 이윤추구 행위<sup>2)</sup>는 할 수 없음.</p> <p>본 양허표의 구체적 개별 분야 또는 업종에 달리 명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사 설립은 약속 안함.</p> <p>기존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 공급 및 사업 운영을 규정하거나 허가한 개별 허가서 및 기타 승인 문서에 기재되는 소유, 운영, 법적 형태 및 활동 범위 조건은 베트남의 WTO 가입일 현재 조건보다 더 엄격해지지 않을 것임.</p>	<p>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p> <p>보조금 수령 자격은 베트남 서비스 공급자, 즉 베트남 영역 내 또는 베트남 영역의 일부에 설립된 법인으로 제한될 수 있음. 주식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일회성 보조금 지급은 이 약속의 위반이 아님. 연구개발 보조금은 약속 안함. 의료, 교육 및 시청각 분야 보조금은 약속 안함. 소수 인종의 복지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보조금은 약속 안함.</p>	

1) 경영 협력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에 의해 서명된 문서로서(최소한 한 당사자는 베트남의 법적 주체이고 한 당사자는 외국의 법적 주체이어야 함) 법적 주체를 새로이 설립하지 아니하고 투자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의 책임 및 당사자 간의 사업 책임 공유를 명시한 문서임.

2) 대표 사무소는 무역 및 관광 기회를 추구하고 촉진하고자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의 하위 조직이나 직접 이윤추구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외국인 투자회사는 관련 기관에게 투자 프로세스 수행을 위한 토지 리스 승인을 받아야 함. 토지 리스기간은 해당 기업의 운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으로서, 투자 허가서에 명기되어야 하고 해당 기업의 운영기간이 관련 기관에 의해 연장될 때마다 상응하여 연장될 것임.</p> <p>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베트남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자본을 출자하는 것이 허용됨. 이 때 베트남 법률에 달리 규정되거나 관련 베트남 기관에 의해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총 지분이 개별 기업 설립 지분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p> <p>외국인의 베트남 기업 지분 취득 30% 제한 규정은 합작 사업은행 지분을 통한 지분 출자 및 본 양허표에서 약속되지 않은 분야를 제외하고, WTO 가입일로부터 일 년 후에 삭제 될 것임. 본 양허표에서 약정된 다른 분야 및 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기업 지분 취득 수준은 (적용 가능한 경우에) 과도기 제한 요건을 포함한 본 양허표에 명기된 외국 자본 참여 제한에 합치해야 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4) 다음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적 체류와 관련된 조치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a) <u>기업내 전근자</u></p> <p>아래에 정의된 베트남 영역 내에 상업적 주제를 설립한 외국 기업의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는 해당 외국 기업에 1년 이상 고용되었으며 기업내 전근자로 해당 상업적 주제로 일시 이동하는 자로서, 입국 및 최초 3년 동안의 체류가 허용되며 해당 기업의 베트남 내 운영 조건에 상응하여 체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p> <p>전체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의 20% 이상이 베트남 국민이어야 함. 그러나 각 기업당 최소 3명의 비베트남인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가 허용됨.</p> <p>관리자 및 임원은 베트남에 상업적 주제를 설립한 기업에서 기업 조직 전체 또는 조직 부서의 관리 및 경영을 주로 통솔하고 이사회 ·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시만을 받으며 다른 감독직·전문직·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감독 또는 통제하거나 직원에 대한 고용, 해고 또는 이에 대한 추천 및 그 밖의 인사상의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며 기업의 실질적인 서비스에 공급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하지 않는 자.</p> <p>전문가는 조직 내에서 고도의 지속적인 전문성이 있는 지식을 보유하고 당해 기업의 서비스, 연구 설비, 관리 부문에 지식을 가진 자연인. 그러한 지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 상업적 주제와 관련된 지식의 보유 여부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요하는 업무에 적용되는 고도의 역량 또는 기술 보유 여부도 평가하게 될 것임.</p>	<p>4) 시장접근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b) <u>기타 인력</u></p> <p>베트남 영역 내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한 외국 기업에 의해 베트남 영역 이외 지역에서 고용되었고 베트남 인력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베트남에 있는 해당 외국 기업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위 (a)에 정의됨)는 관련 고용계약의 조건에 따른 기간 또는 입국 후 최초 3년 중에서 짧은 기간 동안 체류가 허용되며, 해당 인력과 상업적 주재 사이에 체결된 고용 계약에 따라 체류가 연장될 수 있음.</p> <p>(c) <u>서비스 판매 인력</u></p> <p>베트남 영역 내에 소재하지 아니하며, 베트남 영역 내에서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자연인으로서 서비스 제공자를 대표하여 서비스 판매 협상 활동에 종사하는 자.</p> <p>단, (i)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그러한 서비스를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ii) 직접 서비스 제공에 개입하지 아니함. 이러한 서비스 판매자의 체류기간은 90일로 제한됨.</p> <p>(d) <u>상업적 주재 설립 인력</u></p> <p>베트남에 당사국 서비스 제공자의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기 위한 법인 내 관리자 및 임원(위 (a)에 정의됨)은 (i) 직접 판매 및 서비스 제공 활동을 하지 아니하며, (ii)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베트남 이외의 당사국 영역 내에 주 사업장을 소유하고 베트남 내에 다른 상업적 주재가 없는 경우 90일간 체류 가능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e) <u>계약 서비스 공급자(CSS)</u></p> <p>베트남에 상업적 주재가 없는 외국 기업의 피고용인인 자연인은 다음 조건 및 요건이 만족될 경우 베트남 입국 후 90일 또는 계약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체류 가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서비스 계약을 수주했고, 베트남의 관련 기관이 계약의 진실성 보증에 필요한 절차를 수립할 능력이 있을 것.</li> <li>- 계약 서비스 공급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대학 학위 또는 대학 학위에 준하는 지식 보유를 증명하는 기술자격 문서</li> <li>(b) 베트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 전문적인 자격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자격, 그리고,</li> <li>(c) 5년 이상의 해당 분야 실무 경험</li> </ul> </li> <li>- 서비스 계약에 의해 체류가 보장되는 사람들의 수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람의 수보다 많아서서는 아니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람들의 수는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요건에 의해 결정됨.</li> <li>- 계약 서비스 공급자는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가 없는 외국 기업에 2년 이상 고용된 자이어야 하며 위에 기재된 “전문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li> </ul> <p>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CP 841-845, 849)와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2) 분야 인력들은 입국이 허용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II. 분야별 구체적인 약속</b>			
<b>1. 사업 서비스</b>			
<b>A. 전문직 서비스</b>			
(a) 법률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변호사 조직 <sup>3)</sup> 은 베트남에 다음 형태로 상업적 주재를 설립할 수 있음. - 외국 변호사 조직의 지사 - 외국 변호사 조직의 자회사 - 외국 로펌 <sup>4)</sup> - 외국 변호사 조직과 베트남 합명회사 간의 합명회사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소송시 베트남 법정에서 피고 또는 고객 대리인의 자격으로 참석 - 법률 문서 준비 및 베트남법 인증 서비스)	자문 변호사가 베트남 법학 대학을 졸업하고 베트남 법률 실무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만족할 경우, 외국 변호사 조직의 상업적 주재는 베트남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회계, 감사, 회계장부정리 서비스 (CPC 86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외국 변호사 조직은 현역 변호사로 구성된 조직으로 하나 이상의 외국 변호사 또는 로펌에 의해 외국에 설립된 모든 상업적 법인 형태(로펌, 법률회사, 주식회사 등)를 포괄함.  
4) 외국 로펌은 베트남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외국 변호사 조직에 의해 베트남에 설립된 조직.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세무 서비스 (CPC 86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WTO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개별 사안별로 허가가 발급 될 것이며 서비스 제공자의 수는 재무부가 베트남 시장 <sup>5)</sup> 의 필요성 및 개발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임.  WTO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건축설계 서비스 (CPC 86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WTO 가입일로부터 2년 동안, 100%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외국 기업은 당사국의 법인이어야 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5) 주요 기준은 베트남 시장에서 활동 중인 기업의 운영 상황과 수,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 및 경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f)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WTO 가입일로부터 2년 동안 100%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외국 기업은 당사국의 법인이어야 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도시-농촌 개발 계획, 부문별 개발 계획 수립 을 위한 지형학·지질학·수문지질학·환경 조사 및 기술 조사 관련 서비스 제공은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sup>6)</sup> .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도시 계획 및 경관 건축 서비스 (CPC 867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WTO 가입일로부터 2년 후, 100%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 이 가능함. WTO 가입일로부터 2년 동안, 100%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외국 기업은 당사국의 법인이어야 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법적 주체 지위를 보유하고 베트남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베트남 건축설계 조직에서 근무하며 자격증을 보유한 건축 설계사에 의해 서비스 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근무하는 해당 외국인 건축설계사는 베트남 정부가 수여하거나 인정하는 건축설계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국가 보안 또는 사회 질서유지를 위해 베트남 정부의 규제가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제공이 허락되지 않음 <sup>7)</sup> .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6) 투명성을 위한 주석: GATS의 XIV조 및 XIV조의 2에 의거하여 국가 보안 및 공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제한을 가하거나 유지할 수 있음.  
 7) 투명성을 위한 주석: GATS의 XIV조 및 XIV조의 2에 의거하여 국가 보안 및 공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제한을 가하거나 유지할 수 있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수의료 서비스 (CPC 932) <sup>8)</sup>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기업 활동에 한해 자연인의 접근이 허용되며 이 때 관련 기관의 허가가 요구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CPC 841-845, CPC 849)</b>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WTO 가입일로부터 2년 동안 100%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WTO 가입일로부터 3년 후 지사 설립이 허용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지사의 장이 베트남 거주자여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C. 연구 및 개발 서비스</b>			
(e) 자연 과학 연구 개발 서비스 (CPC 85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E. 운전인력을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b>			
(b) 항공기 관련 (CPC 8310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8) 수의료용 미생물 변종 보관은 제외.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d) 기타 기계 및 장비 관련 (CPC 83109)</p>	<p>1) 산업용 기계 및 장비(제한 없음)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산업용 기계 및 장비(제한 없음)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b>F. 기타 사업 서비스</b></p>			
<p>(a) 광고서비스 (CPC 871, 담배 광고 제외)</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WTO 가입 즉시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베트남 파트너와 함께 합작 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WTO 가입 즉시 법정 자본금의 5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 자본이 출자한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2009년 1월 1일부터는 합작 회사의 외국 자본 출자 제한이 삭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포도주 및 주류 광고는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규정에 따름.</p>

9) 광업 및 유전 장비 제외; 상업 라디오, 텔레비전 및 커뮤니케이션 장비.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시장조사 서비스 (CPC 864, 86402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WTO 가입 즉시 법정 자본금의 5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 자본이 출자한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2009년 1월 1일부터는 100% 외국인 투자 기업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경영 컨설팅 서비스 (CPC 86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WTO 가입일로부터 3년 후 지사 설립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지사의 장이 베트남 거주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경영 컨설팅 관련된 서비스 - CPC 866(CPC 86602제외) - 사업자간 상업적 분쟁시 중재 및 조정 서비스 (CPC 8660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WTO 가입일로부터 3년 후 지사 설립이 허용됨. CPC 86602를 제외한 CPC 866: WTO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은 합작 회사 또는 사업 협력 계약 형태에 한함. 그 이후부터는 제한 없음. 사업자 간 상업적 분쟁시 중재 및 조정 서비스(CPC 86602**): WTO 가입일로부터 3년 동안은 약속 안함. 그 이후부터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지사의 장이 베트남 거주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기술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 운송 차량의 부합성 검사 및 운송 차량 검정 검사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해당 서비스가 정부의 권한 행사를 통해 제공된다는 이유로 과거에 민간 부문과의 경쟁을 허용하지 않았던 부문을 민간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방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민간 부문 경쟁이 허용되는 날로부터 3년 후부터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합작 회사 설립은 외국인 소유 제한 없이 허용됨. 민간 부문 서비스 제공자에게 경쟁이 허용된 날로부터 5년 후부터 아무런 제한 없음.  특정 지리적 영역에 대한 접근은 국가 보안을 위해 제한될 수 있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농업·수렵 및 임업 부수 서비스 (CPC 881) <sup>10)</sup>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합작 회사 또는 사업 협력 계약의 형태에 한함. 외국자본 출자는 합작 회사 법정 자본금의 51%를 초과할 수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특정 지리적 영역에 대한 접근은 국가 보안을 위해 제한될 수 있음 <sup>11)</sup> .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0) 산림 개발, 회귀 야생동물 수렵 및 포획, 항공 촬영, 항공 파종, 항공 약제 살포 및 농업에서의 미생물·식물·동물의 유전자원 서비스를 포함한 천연림 조사, 탐사 및 평가 관련 서비스는 제외됨. 모호성 회피를 위한 주석: 축산업 및 종축 개선은 본 약정에 포함됨.

11) 투명성을 위한 주석: GATS의 XIV조 및 XIV조의 2에 의거하여 국가 보안 및 공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제한을 가하거나 유지할 수 있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h) 광업 부수 서비스 (CPC 883)</p> <p>1. 본 양허표에 명시된 약속은 다음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함: 장비·화학약품·원료·공급기반 서비스, 석유시추/해상 지원선·숙박 및 케이터링·헬리콥터 서비스.</p> <p>2. 본 양허표에 명시된 약속은 GATS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게 부여된 권리 및 의무와 완전히 합치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영역 또는 관할권 내에서 석유 및 가스 관련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 및 절차를 수립할 수 있는 베트남 정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p>	<p>1)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은 베트남 법률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베트남 정부의 관련 기관에 등록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음.</p> <p>2) 제한 없음.</p> <p>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p> <p>WTO 가입 즉시 외국인 출자 자본이 49%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WTO 가입일로부터 3년 후 외국 자본 출자 제한은 51%로 확대됨. 그로부터 2년 후에는 100% 외국인 투자 회사 설립이 허용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시장 접근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시장 접근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p>	
<p>(i) 제조 부수 서비스 (CPC 884, 885)</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p> <p>WTO 가입일로부터 3년 후에는 외국 자본의 출자비율이 50%를 넘지 않는 합작 회사에 한해 허용됨. 그로부터 5년 후에는 100% 외국인 투자 회사 설립이 허용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m)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 관련 <sup>12)</sup> (CPC 86751, 86752, 86753에 포함)	1)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은 베트남의 적용 법률에 명기된 조항에 따라 베트남 정부의 관련 기관에 등록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WTO 가입 즉시 외국인 지분 출자가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WTO 가입일로부터 3년 후에는, 출자 제한이 51%로 확대됨. 그로부터 2년 후에는 100% 외국인 투자 회사가 설립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시장 접근만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시장 접근만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n) 장비 관리 및 수리 서비스(선박·항공기 또는 기타운송장비 제외) (CPC 63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WTO 가입 즉시 외국인 지분 출자가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WTO 가입일로부터 3년 후에는 외국 자본의 출자 제한이 51%로 확대됨. 그로부터 2년 후에는 100% 외국인 투자 회사 설립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시장 접근만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2) 탐사, 조사, 탐험, 실사 관련 서비스 공급은 베트남의 법률 및 규정에 따름.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인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b>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b></p> <p><b>B. 쿠리어 서비스 (CPC 7512**)</b></p> <p>* 국내 및 해외 행선지로 배달되는 다음 항목의 수집, 분류, 운송 및 배달을 포함하는 특급 배달 서비스<sup>13)</sup>:</p> <p>(a) 다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물리적 매체에 적힌 서신 송달<sup>14)</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이브리드 메일 서비스</li> <li>- 다이렉트 메일(DM)</li> </ul> <p>다음에 해당하는 서신 송달 항목의 취급은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하위 중량등급에 속하는 국내 보통 우편물</li> <li>- 요금의 10배 미만인 국내 우편물</li> <li>- 요금이 미화 9달러 미만인 국제 우편물</li> </ul> <p>단, 취급 항목의 총 무게가 2,000그램 미만일 경우에 한함.</p> <p>(b) 소포<sup>15)</sup> 및 기타 물품</p> <p>* 주소지 불명 물품의 취급</p>	<p>1) 제한 없음<sup>16)</sup>.</p> <p>2) 제한 없음.</p> <p>3) WTO 가입 후 처음 5년 이내에는 합작 회사의 외국 자본 출자비율이 51%로 제한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p> <p>WTO 가입일로부터 5년 후에는 100% 외국인 투자 회사 설립이 허용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다른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베트남 우체국 또는 우체국 사회사의 경쟁 활동을 위해 부여되는 대우와 동등한 우호적 대우를 부여함.</p>

13) 특급 배달 서비스는 빠른 속도와 신뢰성 이외에도 발신인으로부터 우편물 직접 수집,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 배송 추적, 배송 중 목적지 및 주소지 변경 가능, 수취 확인 등 부가가치 요소를 포함함.

14) 서신 송달에는 편지, 엽서, 수기문 및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잡지 등의 인쇄물, 그리고 청구서 또는 송장 등의 상업적 문서가 포함됨.

15) 도서 및 도서 목록은 본 양허표에 포함됨.

16)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현지 서비스 제공자와 제휴 하에 수집 및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b>C. 통신 서비스</b></p> <p>본 양허표 하의 약속은 “기본 통신 서비스 약정서” (S/GBT/W/2/Rev.1) 및 ”주파수 가용성에 관한 시장 접근 제한” (S/GBT/W/3)에 따라 작성됨.</p> <p>본 양허표 하에서 “비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는 전송 용량은 갖추지 않았지만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해저 케이블 전송 용량을 포함, 그러한 전송 용량 계약(장기 임대 포함)을 체결한 서비스 공급자를 의미함. 비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는 통신 장비를 사내에 소유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하며 공공 서비스 제공 포인트(POP)가 허용됨.</p> <p><u>기본 통신 서비스</u></p> <p>(a) 음성 전화 서비스 (CPC 7521)</p> <p>(b) 팩킷 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CPC 7523**)</p> <p>(c) 회선 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CPC 7523**)</p> <p>(d) 텔렉스 서비스 (CPC 7523**)</p> <p>(e) 진신 서비스 (CPC 7523**)</p> <p>(f) 팩시밀리 서비스 (CPC 7521***+7529**)</p>	<p>1)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p> <p>유선 및 이동 통신 서비스: 베트남에서 설립되고 국제 통신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은 주체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p> <p>위성기반 서비스: 다음 대상에게 제공되는 위성기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국제 위성서비스 제공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제공함.</p>	<p>1) 제한 없음.</p>	<p>베트남은 본 양허표에 첨부된 참조 문서에 기재된 의무 사항을 준수함.</p> <p>베트남이 당사자인 해저 케이블 링크 컨소시엄의 경우,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베트남 내 허가 받은 케이블 유양국까지 연결된 100% 자기 소유 케이블 전송 용량(예. 장기계약을 통한 회선 임대(IRU) 또는 컨소시엄 소유)을 통제할 수 있으며 베트남 내 허가 받은 국제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러한 용량을 제공할 수 있음.</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g) 전용 회선 서비스 (CPC 7522**+7523**) (0*) 기타 서비스 - 화상회의 서비스 (CPC 75292) - 방송 17)을 제외한 비디오 전송 서비스 - 전화 기반 서비스: + 이동 전화 서비스 (지상 및 위성) + 이동 데이터 서비스 (지상 및 위성) + 호출 서비스 + PCS + 주파수 공용 서비스 - 인터넷 교환 서비스 (IXP) <sup>18)</sup>	- WTO 가입 즉시: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역외 및 해상 기반 기업 고객, 정부 기관,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 국제 공식 기구의 대표 사무소, 외교대표부 및 영사관, 하이테크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 - WTO 가입으로부터 3년 후: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다국적 기업 <sup>19)</sup> 2) 제한 없음. 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비 설비기반 서비스: WTO 가입 즉시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은 합작 회사 법정 자본금의 51%를 초과할 수 없음. WTO 가입으로부터 3년 후: 합작 회사 설립시 파트너 선택권 제한이 삭제됨.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은 법정 자본금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설비기반 서비스: WTO 가입 즉시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외국 자본 출자비율은 합작회사 법정 자본금의 49%를 초과할 수 없음. 합작 회사 자본의 51%를 보유하면 경영권을 확보함. 통신 분야에서 경영협력 계약을 통해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는 현재 계약을 갱신하거나 또는 현재 조건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형태의 설립체로 전환할 수 있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WTO 가입으로부터 4년 후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그러한 용량을 베트남 내 허가받은 국제 VPN 및 IXP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17) 방송은 일반 대중에게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신호를 배급하는데 필요한 연속적 전송 고리로 정의되며 방송에는 사업자간 기여 회선이 포함되지 않음.

18) 다른 사업자의 망 및 국제 인터넷 백본망에 연결된 인터넷 접속 서비스(IAS) 공급자.

19) 다국적 기업은 다음 조건을 갖춘 주식회사를 의미함: a)베트남에 상업적 주재가 설립됨. b) 하나 이상의 다른 당사국에서 운영 중임. c)5년 이상 사업 운영 d)당사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음. 그리고 e)하나 이상의 당사국에서 위성 서비스 사용이 허가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기본 통신서비스:</p> <p>(0*) 기타 서비스</p> <p>- 가상개인통신망 (VPN)<sup>20)</sup></p>	<p>1)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p> <p>우선 및 이동 통신 서비스를 제외하고 제한 없음: 유선 및 이동 통신 서비스는 베트남에서 설립되고 국제 통신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은 주체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p> <p>위성 기반 서비스: 다음 대상에게 제공되는 위성기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국제 위성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제공함.</p> <p>- WTO 가입 즉시: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역외 및 해상 기반 기업 고객, 정부 기관,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 국제 공식 기구의 대표 사무소, 외교대표부 및 영사관, 하이테크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p> <p>- WTO 가입으로부터 3년 후: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다국적 기업<sup>19)</sup></p> <p>2) 제한 없음.</p> <p>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베트남은 본 양허표에 첨부된 참조 문서에 기재된 의무 사항을 준수함.</p> <p>베트남이 당사국인 해저 케이블 링크 권소시엄의 경우,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베트남 내 허가받은 육양국까지 연결된 100% 자기 소유 케이블 전송 용량 (예. 장기계약을 통한 회선임대 (IRU) 또는 권소시엄 소유)을 통제할 수 있으며 베트남 내 허가받은 국제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WTO 가입 으로부터 4년 후,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그러한 용량을 베트남 내 허가받은 국제 VPN 및 IXP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p>

20) VPN 생성 이전에 정의된 폐쇄 사용자 그룹 간 비영리 목적의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수행을 위하여 공중(공유) 네트워크 위에 시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관리하는 서비스로 상업적 조건으로 제공됨. 그러한 그룹은 기업 그룹이나 조직, 또는 공동 이익 추구를 통하여 제후 관계가 형성된 법적 주체들의 그룹을 포함함. VPN 서비스를 이용하는 폐쇄 사용자 그룹의 초기 회원은 관련 당국이 승인한 경로 계획 및 번호 사용계획에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며 관련 당국의 감독을 받음. 회원 변경이 있을 경우 VPN 서비스 제공자는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2주 전에 관련 당국에게 회원 변경을 고지해야 하며 이 2주 동안 관련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반대 의견도 제기되지 않을 경우 상용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음. 회원은 제휴관계가 없는 제 3자에게 VPN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음. VPN 서비스는 허가받은 외국인 투자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인터넷 접속 서비스 및 (h)부터 (n)에 기재된 부가 가치 서비스와 함께 일괄 공급될 수 있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비 설비기반 서비스: WTO 가입 즉시 파트너 선택권 제한 없이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은 합작 회사 법정 자본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p> <p>설비기반 서비스: WTO 가입 즉시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외국 자본 출자비율은 합작회사 법정 자본금의 49%를 초과할 수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u>부가 통신 서비스</u></p> <p>(h) 전자 메일 (CPC 7523**)</p> <p>(i) 음성 메일 (CPC 7523**)</p> <p>(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 베이스 검색 (CPC 7523**)</p> <p>(k) 전자 데이터교환 (EDI) (CPC 7523**)</p> <p>(l) 고도/부가 팩시밀리 서비스(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 포함) (CPC 7523**)</p>	<p>1)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p> <p>유선 및 이동 통신 서비스: 베트남에서 설립되고 국제 통신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은 주체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p> <p>위성 기반 서비스: 다음 대상에게 제공되는 위성기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국제 위성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제공함.</p>	<p>1) 제한 없음.</p>	<p>베트남은 본 양허표에 첨부된 참조 문서에 기재된 의무 사항을 준수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p> <p>(n)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 프로세싱(거래 프로세싱 포함) (CPC 843**)</p>	<p>- WTO 가입 즉시: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역외 및 해상 기반 기업 고객, 정부 기관,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 국제 공식 기구의 대표 사무소, 외교대표부 및 영사관, 하이테크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p> <p>- WTO 가입으로부터 3년 후: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다국적 기업<sup>19)</sup></p> <p>2) 제한 없음.</p> <p>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p> <p>비 설비기반 서비스: WTO 가입 즉시 파르티너 선택권 제한 없이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은 합작 회사 법정 자본금의 51%를 초과할 수 없음.</p> <p>WTO 가입으로부터 3년 후: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은 법정 자본금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설비기반 서비스: WTO 가입 즉시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회사 설립 또는 경영 협력 계약 체결이 허용됨. 외국 자본 출자비율은 합작회사 법정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p> <p>합작 회사 지분의 51%를 보유하면 경영권을 확보함.</p> <p>통신 분야에서 경영협력 계약을 통해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는 계약을 갱신하거나 현재의 조건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형태의 설립체로 전환할 수 있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추가적 약속</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부가 통신 서비스</p> <p>(o) 기타</p> <p>- 인터넷 접속 서비스 (IAS)<sup>21)</sup></p>	<p>1) 유선 및 이동 통신 서비스: 베트남에서 설립되고 국제 통신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은 주체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p> <p>위성 기반 서비스: 다음 대상에게 제공되는 위성기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국제 위성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제공함.</p> <p>- WTO 가입 즉시: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역외 및 해상 기반 기업 고객, 정부 기관,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 국제 공식 기구의 대표 사무소, 외교대표부 및 영사관, 하이테크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p> <p>- WTO 가입으로부터 3년 후: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다국적 기업<sup>19)</sup></p> <p>2) 제한 없음</p> <p>3) 비 설비기반 서비스: WTO 가입 즉시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은 합작 회사 법정 자본금의 51%를 초과할 수 없음.</p> <p>WTO 가입으로부터 3년 후: 합작 회사 설립시 파트너 선택권 제한이 삭제됨.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은 법정 자본금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p> <p>설비기반 서비스: WTO 가입 즉시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외국 자본 출자비율은 합작회사 법정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베트남은 본 양허표에 첨부된 참조 문서에 기재된 의무 사항을 준수함.</p>

21) 최종 수요자에게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D. 시청각 서비스</b>	영화 제작, 배급 및 상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모든 영화의 내용은 베트남의 관련 기관에 의해 검열되어야 함.		
(a) 영화 제작 (CPC 96112, 비디오 테이프 제외)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베트남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받은 베트남 파트너와의 사업 협력 계약 또는 합작 회사 형태에 한해 가능. 외국 자본 출자는 합작 회사 법정 자본금의 51%를 초과할 수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영화 배급 (CPC 96113, 비디오 테이프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베트남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받은 베트남 파트너와의 사업 협력 계약 또는 합작 회사의 형태에 한해 가능. 외국 자본 출자는 합작 회사 법정 자본금의 51%를 초과할 수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영화 상영 서비스 (CPC 9612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베트남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받은 베트남 파트너와의 사업 협력 계약 또는 합작 회사의 형태에 한해 가능. 외국 자본 출자는 합작 회사 법정 자본금의 51%를 초과할 수 없음. 베트남의 문화회관, 영화상영관, 공공 영화 클럽·협회, 이동 상영팀은 외국 서비스 제공자와의 사업 협력 계약 또는 합작 회사 설립에 참여할 수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녹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b>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b></p> <p>A. 일반 빌딩 건설작업 (CPC 512)</p> <p>B. 일반 토목공학 건설작업 (CPC 513)</p> <p>C. 설치 및 조립 작업 (CPC 514, 516)</p> <p>D.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 (CPC 517)</p> <p>E. 기타 (CPC 511, 515, 518)</p>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WTO 가입일로부터 2년 동안 100%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외국 기업은 당사국의 법인이어야 함. WTO 가입일로부터 3년 후 지사 설립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지사의 장이 베트남 거주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b>4. 유통 서비스</b></p> <p>유통 서비스의 모든 업종에 적용 가능한 조치:</p> <p>담배, 시가 도서, 신문, 잡지, 모든 매체를 매개로 한 영상 녹음, 귀금속, 약품 및 약물<sup>22)</sup>, 폭발물, 원유 및 가공유, 쌀, 수수설탕, 무설탕은 약경에서 제외됨.</p>			
<p>A. 위탁 중개인 서비스 (CPC 621, 61111, 6113, 6121)</p>	<p>1)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 사용 용도의 상품 유통</li> <li>- 개인적·상업적 사용 용도의 합법적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통</li> </ul>	<p>1) 시장 접근란 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B. 도매 서비스 (CPC 622, 61111, 6113, 6121)</p>	<p>2)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C. 소매 서비스 (CPC 631+632, 61112, 6113, 6121)<sup>23)</sup></p>	<p>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p> <p>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 회사 설립이 요구되며 외국 자본 출자는 49%를 초과할 수 없음. 2008년 1월 1일부터 49% 지분 제한이 삭제됨. 2009년 1월 1일부터는 아무런 제한 없음.</p> <p>WTO 가입 즉시, 유통 서비스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시멘트, 시멘트 클링커, 타이어(비행기 타이어 제외), 종이, 트랙터, 자동차, 승용차 및 오토바이, 철강, 시청각 장치, 포도주 및 주류, 비료를 제외한 모든 국내 생산품 및 합법적 수입품의 도매·소매·위탁 중개인 업무 진출이 허용됨.</p>	<p>3) 제한 없음.</p>	

22) 본 양허표의 “약품 및 약물”은 정제, 캡슐 또는 분말 형식으로 제조된 비약품 영양 보조제를 포함하지 않음.

23) 투명성을 위한 주석: 본 약정은 적절한 훈련과 인증을 받고 본인 판매 물품에 대한 직접적 판매 수단 뿐 아니라 다른 유통 채널의 판매를 지원한 대가로 지원 수당을 받는 베트남 개인 위탁 중개인에 의한 이동식 다단계 판매도 포함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2009년 1월 1일부터 유통 서비스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트래더, 자동차, 승용차 및 오토바이의 도매·소매·위탁 증개인 업무 진출이 허용됨.</p> <p>본 협정의 효력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유통 서비스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모든 국내 생산품 및 합법적 수입품의 도매·소매·위탁 증개인 업무 진출이 허용됨.</p> <p>소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매점을 설립하기 위해서 (첫 번째 소매점 이후부터는) 경제적 필요성 테스트(ENT)<sup>24)</sup>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D. 프랜차이즈 서비스 (CPC 8929)</p>	<p>1) 2) 제한 없음.</p> <p>3)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 회사 설립이 요구되며 외국인 출자 자본이 49%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p> <p>2008년 1월 1일부터 49% 지분 제한이 삭제됨. 2009년 1월 1일부터는 아무런 제한 없음.</p> <p>WTO 가입일로부터 3년 후 지사 설립이 허용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2) 제한 없음.</p> <p>3) 지사의 장이 베트남 거주자여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24) 하나 이상의 소매점 설립 신청은 이미 확정되어 공중에게 공개된 절차를 따르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승인이 이루어짐. 경제적 필요성 테스트의 주요 기준으로는 특정 지리적 영역 내에 존재하는 기존 서비스 제공자 수, 시장의 안정성 및 지리적 범위가 있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5. 교육 서비스</b> 기술 과학, 자연 과학, 기술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국제법, 언어 교육학 분야에 한함. 아래의 (C), (D), (E)의 교육 내용은 베트남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B. 중등 교육 서비스 (CPC 92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고등 교육 서비스 (CPC 92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D. 성인 교육 서비스 (CPC 924)	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WTO 가입 즉시, 합작 회사 형태에 한해서만 가능. 그러한 합작 회사 지분을 외국인이 과반수 이상 보유하는 것이 허용됨. 2009년 1월 1일부터 100% 외국인 투자교육 기관이 허용됨. WTO 가입일로부터 3년 후부터는 제한 없음.	3) 외국인 투자 학교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교사는 최소 5년 이상의 교수 경험을 보유 하고 관련 기관에 의해 자격 요건을 인정받아야 함.	
E. 기타 교육 서비스 (CPC 929, 외국인 교육 포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6. 환경 서비스</b> 특정 지리적 영역에 대한 접근은 국가 보안을 위해 제한될 수 있음 <sup>25)</sup> .			
A. 하수 서비스 (CPC 9401)	1)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1:3(c)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부의 권한 행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국가기관에게 독점권을 주거나 민간 운영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 WTO 가입 즉시, 5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 자본 출자는 WTO 가입으로부터 4년 동안 허용됨. 그 이후부터는 제한 없음.	1)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외국 기업은 베트남에서 BOT방식(건설-운영-양도) 및 BTO 방식(건설-양도-운영)으로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5) 투명성을 위한 주석: GATS의 XIV조 및 XIV조의 2에 의거하여 국가 보안 및 공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제한을 가하거나 유지할 수 있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 <sup>26)</sup>	1)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I:3(c)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부의 권한 행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국가기관에게 독점권을 주거나 민간 운영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 외국인 지분 소유는 WTO 가입 후 4년 동안 51%로 제한됨. 그 이후부터는 제한 없음. 공공복지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은 개별 가정으로부터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는 것이 금지됨. 외국인 투자 기업은 해당 시도 관계 기관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수거점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외국 기업은 베트남에서 BOT방식(건설-운영-양도) 및 BTO 방식(건설-양도-운영)으로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D. 기타 서비스 - 배기 가스 청소 서비스 (CPC 94040) 및 소음 저감 서비스 (CPC 94050)	1)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I:3(c)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부의 권한 행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국가기관에게 독점권을 주거나 민간 운영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 외국인 지분 소유는 WTO 가입 후 4년 동안 51%로 제한됨. 그 이후부터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6) 폐기물 수입은 법에 의해 금지됨. 유해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은 법에 의해 규제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환경 영향 평가 서비스 (CPC 9409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 소유는 WTO 가입 후 4년 동안 51%로 제한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그 이후부터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7. 금융 서비스</b>			
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다음은 제한 없음: - 외국인 투자 기업 및 베트남 내 근무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보험 서비스 - 재보험 서비스 - 다음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포함한 국제 운송 관련 보험 서비스: + 다음의 일부, 혹은 전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국제 해상 운송사 및 국제 상업 항공사: 수송 화물 보장 보험, 화물의 차량 운송 및 차량 운송으로부터 유발되는 책임 관련 보험, 그리고, + 국제 수송 화물 보장 보험 - 보험 중개 및 재보험 중개 서비스 - 자문, 보험 계리, 위험 평가 및 손해 사정 서비스	1) 제한 없음.	
a. 직접보험 (a)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외한 생명보험 (b) 비 생명보험 서비스			
b. 재보험 및 재재보험			
c. 보험 중개 (중개 및 대리업)			
d. 보험 부수 서비스 (자문, 보험 계리, 위험 평가 및 손해 사정 포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2) 제한 없음.</p> <p>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p> <p>100% 외국인 투자 보험 회사는 자동차 제 3자 책임보험, 건설 및 시공 관련 보험,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 보험, 공공 안보 및 환경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는 프로젝트 및 건설 작업 관련 보험 등의 강제 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p> <p>2008년 1월 1일부터 이 제한 요건은 삭제됨.</p> <p>WTO 가입일로부터 5년 후, 외국 보험회사의 비 생명 보험 취급 지사는 신중한 규제를 거친 후 설립이 허용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b>B.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b></p> <p>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에 관한 약속은 GATS의 VI조 및 금융 서비스 부속서 2(a)항과 합치되도록 베트남 관련 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수립됨.</p> <p>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 또는 상품 양허표는 통상적으로 비차별적인 기조로 관련 제도적 및 법적 형식 요건에 따름.</p>	<p>1) B(k) 및 B(l)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p> <p>(a) 외국 금융기관은 다음 형태에 한해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 설립이 허용됨.</p> <p>(i) 외국 상업 은행의 경우: 대표 사무소, 외국 상업은행의 지사, 외국인 출자 자본이 설립자본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 상업은행, 합작 금융 리스회사, 100% 외국인 투자 금융 리스회사, 합작 금융회사, 100% 외국인 투자 금융 회사, 그리고 2007년 4월 1일부터 100% 외국인 소유 은행 설립이 허용됨.</p> <p>(ii) 외국 금융 회사의 경우: 대표 사무소, 합작 금융회사, 100% 외국인 투자 금융회사, 합작 금융 리스회사, 100% 외국인 투자 금융 리스회사.</p>	<p>1) B(k) 및 B(l)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p> <p>(a) 외국 상업은행의 베트남 지사 설립 조건: - 설립 신청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모기업의 총 자산이 미화 200억 달러 이상.</p>	
<p>(a) 공공으로부터의 예금 및 기타 상환가능한 자금 수취</p>			
<p>(b) 소비자 금융, 주택담보 대출, 상거래 자금조달 및 팩토링 금융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출</p>			
<p>(c) 금융 리스</p>			
<p>(d) 신용 카드 및 직불 카드, 여행자 수표, 은행발행 어음을 포함한 모든 지불 및 송금</p>			
<p>(e) 보증 및 약정</p>			
<p>(f) 다음과 같은 외환시장, 장외시장이나 다른 시장에서의 금융상품의 자기-고객위탁 매매서비스</p>			
<p>-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CD 포함)</p>			
<p>- 외환</p>			
<p>- 금융파생상품(선물, 옵션 포함)외환·금리 상품(스왑, 선도 금리 약정 포함)</p>			
<p>- 금과</p>			
<p>(h) 통화 증개</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i)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모든 형태의 간접 투자관리, 연기금 관리, 보관, 공탁 및 신탁 서비스 등의 자산 관리</p> <p>(j) 증권 상품, 파생 상품 및 기타 양도 가능한 상품을 포함한 금융 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p> <p>(k) 기타 금융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금융 정보, 금융 데이터 프로세싱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전달</p> <p>(l) 신용조회 및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연구 및 상담, 취득 및 기업 구조조정, 전략에 대한 상담 등 (a) 에서 (k)까지의 모든 활동에 관한 상담 및 기타 부수 금융 서비스</p>	<p>(iii) 외국 금융 리스회사의 경우: 대표 사무소, 합작 금융 리스회사, 100% 외국인 투자 금융 리스회사.</p> <p>(b) WTO 가입일로부터 5년 동안, 외국 은행 지사가 해당 은행과 신용 거래 전력이 없는 베트남 자연인으로부터 베트남 동 예탁금을 수취할 권리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아래와 같이 해당 지사의 납입 자본금에 비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년 1월 1일: 법정 납입 자본금의 650%</li> <li>- 2008년 1월 1일: 법정 납입 자본금의 800%</li> <li>- 2009년 1월 1일: 법정 납입 자본금의 900%</li> <li>- 2010년 1월 1일: 법정 납입 자본금의 1,000%</li> <li>- 2011년 1월 1일: 완전한 내국인 대우</li> </ul>	<p>(b) 합작 은행 또는 100% 외국인 소유 은행의 설립 조건: - 설립 신청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모 기업의 총 자산이 미화 100억 달러 이상.</p>	
	<p>(c) 지분 참여:</p> <p>(i) 베트남은 주식화된 베트남 국영 은행에 대한 외국 금융기관의 지분 참여를 베트남 은행의 지분 참여 수준과 동일하게 제한할 수 있음.</p> <p>(ii) 외국 기관 및 개인이 주식 매입 형식을 취해 베트남 합작 상업은행에 지분 출자를 할 경우, 달리 베트남 법률 또는 베트남 관련 당국에 의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 은행 설립 자본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p>	<p>(c) 100% 외국인 투자 금융회사 또는 합작 금융회사, 100% 외국인 투자 금융 리스회사 또는 금융 리스 합작 회사 설립 조건: - 설립 신청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모 기업의 총 자산이 미화 100억 달러 이상.</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j) 증권 상품, 파생 상품 및 기타 증권관련 상품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p> <p>(k) 증권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금융 정보 및 관련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전달</p> <p>(l) 투자 및 포트폴리오의 연구 및 상담, 취득·기업 구조 조정·전략에 대한 상담 등 상담, 중재 및 기타 부수 증권관련 서비스 ((f)제외, (i)의 기타 서비스는 은행 분야의 (l) 참고)</p>			
<b>8. 의료 관련 및 사회복지 서비스</b>			
<p>A. 병원 서비스 (CPC 9311)</p> <p>B. 의료 및 치과 서비스 (CPC 9312)</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외국 서비스 제공자에게 100% 외국인 투자 병원 또는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 회사의 설립 및 사업 협력 계약 체결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허용됨.</p> <p>병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 주재 설립에 필요한 최소 투자 자본은 종합 병원의 경우 미화 2000만 달러이며, 종합 진료소는 200만 달러, 전문 병원은 20만 달러.</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9. 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b>			
A. 호텔 및 레스토랑 (다음 서비스 포함) - 숙박 서비스 (CPC 64110) - 케이터링 음식(CPC 642) 및 음료(643)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WTO 가입일로부터 8년 동안은 호텔 건축, 재건축, 취득, 리모델링 투자금에 비례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그 이후부터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여행알선대행서비스 (CPC 74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외국 자본 출자 제한을 받지 않고 베트남 파트너와 함께 합작 회사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여 가이드가 베트남 시민이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외국 서비스 제공회사는 인바운드 서비스에 한해 제공할 수 있으며 인바운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바운드 서비스의 일부로서 국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10. 레크리에이션, 문화, 스포츠 서비스</b>			
A.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극장, 라이브랜드, 서커스 서비스 포함) (CPC 9619)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WTO 가입일로부터 5년 후, 외국인 출자 자본이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는 것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기타 - 전자게임 사업 (CPC 96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허가를 받은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회사 설립 또는 사업 협력계약 체결을 통해서만 가능. 외국인 출자 자본은 합작 회사 법정 자본의 49%를 초과할 수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11. 운송 서비스</b>			
<b>A. 해상 운송 서비스</b>	1) 국제 화물 운송(제한 없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a) 베트남 기함 운영을 목적으로 한 등록 회사 설립: WTO 가입일로부터 2년 후,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외국인 출자 자본이 전체 법정 자본의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작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외국 선원은 베트남 소재 합작 기업이 소유한 베트남 기함(또는 베트남에 등록된 선박)에서 일할 수 있으나 전체 선원 중에서 외국 선원의 비율이 1/3을 초과해서는 안 됨. 선장 또는 최초 CEO는 베트남 시민이어야 함.	1) 국제 화물 운송(제한 없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국제 해상운송 제공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다음 항목 서비스가 제공될 것임. 1. 수로 안내 2. 예선·도선 3. 식량·연료·급수 4. 쓰레기 취합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5. 화물 관리인/항장제도 6. 항행 원조 7. 커뮤니케이션, 급수 및 전기 공급 등 선박의 운항에 필수적인, 항만에 기반을 둔 서비스
(a) 여객 운송(연안 해운 제외) (CPC 7211)			
(b) 화물 운송(연안 해운 제외) (CPC 7212)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b)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sup>27)</sup>:</p> <p>WTO 가입 즉시, 외국 선박 운송회사는 외국인 출자 지분 51% 범위 내에서 합작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WTO가입일로부터 5년 후, 외국 선박 운송 회사는 100% 외국인 투자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p> <p>WTO 가입 즉시, 외국인 투자회사는 아래 기재된 (1)에서 (5)까지의 활동에 한하여 수행 가능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견적서 제출에서 송장 발급까지 고객과 직접 연락을 통한 해상 운송 서비스 마케팅 및 판매 활동.</li> <li>2. 화물 소유주를 대리하여 활동.</li> <li>3. 필요한 기업 정보 제공.</li> <li>4. 통관 문서 또는 기타 운송 화물의 성격 및 원산지 관련 문서를 포함한 운송 관련 문서 준비.</li> <li>5. 연안운송 서비스를 포함, 통합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베트남 기함에 의해 제공되는 해상 운송 서비스 제공.</li> </ol> <p>WTO 가입일부터 5년 후, (6)에서 (7)에 기재된 활동이 허용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회사를 대리하여 선박 기항지를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화물을 인수.</li> <li>7. 회사 운송화물과 관련하여 도로, 철도, 내륙 수로 운송 계약의 협상 및 서명.</li> </ol> <p>WTO 가입시<sup>28)</sup> 외국 운송 회사에 의해 설립될 수 있는 합작 회사 수는 5개로 제한됨.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3개 합작회사가 추가로 허용됨. WTO 가입일로부터 5년 후에는 합작 회사 수 제한 요건이 삭제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비상시 설비 수리</li> <li>9. 정박, 계류, 접안 서비스</li> <li>10. 해운 대리점 서비스 이용 권한<sup>29)</sup></li> </ol>

27)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란 외국 선박 운송회사가 고객에게 통합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화물 관련 국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여기에서 국제 해상 운송은 전체 서비스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해당 외국 선박 운송회사에 의해 제공됨.

28) 외국 운송 회사에 의해 설립되는 합작회사의 수는 베트남이 WTO에 약속한 수로 제한됨.

29) “추가적 약속”란에 기재된 해상 대리점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한과 관련하여 도로, 철도, 내륙 수로, 해안 및 내륙 선박운송 및 관련 부수 서비스 내용이 본 양허표에 자세히 명기되지 않은 경우 복합운송 사업자는 해로를 통한 국제 화물의 지속적인 운송을 위하여 베트남 해운 대리점을 통하여 트럭, 열차, 마지선, 및 관련 장비를 임차하거나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해상 부수 서비스</b> - 컨테이너 취급 서비스 (CPC 7411) <sup>30)</sup>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WTO 가입 즉시 외국자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통관 서비스 <sup>31)</sup>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WTO 가입 즉시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이 5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5년 후에는 합작 회사는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을 받지 않고 설립 가능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저장 서비스 <sup>32)</sup>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WTO 가입 즉시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이 5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작회사 설립이 허용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WTO 가입으로부터 7년 후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B. 내륙 수로 운송 서비스</b> (a) 승객 운송 (CPC 7221) (b) 화물 운송 (CPC 722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WTO 가입 즉시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이 총 범정 자본의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베트남 파트너와 함께 설립한 합작 회사를 통해서만 서비스 제공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0) 공공 영역 접거시 공공사업 허가 절차가 적용됨.  
 31) “통관 서비스”(또는 “세관 브로커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의 주요 활동은 주요 활동은 주요 활동은 주요 활동은 상관없이, 타방 당사국의 관세절차를 대신하여 수입, 수출 또는 화물 운송에 관련된 세관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말함.  
 32)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저장 서비스”는 컨테이너의 하역, 수선 및 선적 준비 작업을 위하여 항구나 내륙에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활동을 말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C. 항공 운송 서비스</b> (a) 항공 운송 서비스 판매 및 마케팅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항공사는 베트남에 있는 발권 사무소 또는 대리인을 통해 서민 서비스 제공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컴퓨터 예약 시스템	1)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베트남 통신당국의 관할 하에 있는 공중 통신망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2) 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3) 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항공기 관리 및 수리 서비스 (CPC 8868**)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WTO 가입 즉시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이 5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WTO 가입일로부터 5년 후에는 100%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Е. 철도 운송 서비스</b> (a) 여객 운송 (CPC 7111) (b) 화물 운송 (CPC 711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외국 자본 출자비율이 총 법정 자본의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베트남 파트너와 함께 설립한 합작 회사를 통해서만 서비스 제공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F. 도로 운송 서비스</b> (a) 여객 운송 (CPC 7121+7122) (b) 화물 운송 (CPC 712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WTO 가입 즉시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외국 지분 출자가 49%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 회사의 설립이나 사업 협력 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제공이 허용됨. WTO 가입일로부터 3년 후에는 시장의 필요성 <sup>33)</sup> 을 판단하여 외국인 출자 자본이 51%를 초과하지 않는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제공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합작 회사의 운전 인력은 100% 베트남 시민이어야 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H. 모든 운송수단의 부수 서비스</b> (a) 컨테이너 취급 서비스 (공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외) (CPC 7411의 일부)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WTO 가입 즉시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베트남 파트너와 함께 설립한 합작 회사를 통해서만 서비스 제공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기타 (CPC 749의 일부) <sup>34)</sup>	1) 화물 중개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WTO 가입일로부터 5년 후에는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WTO 가입 즉시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이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베트남 파트너와 함께 설립한 합작 회사를 통해서만 서비스 제공이 허용됨. WTO 가입일로부터 3년 후에는 출자 제한이 51%로 확대됨. 그로부터 4년 후에는 출자 제한이 삭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화물 중개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WTO 가입일로부터 5년 후에는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3) 고려 기준: 신규 고용 창출, 외환계정 흑자, 경영기법·산업공해 감소·베트남 직원 대상 직업 교육 등에 있어서 선진 기술 도입 가능성

34) 해당 활동: 운임청구서 감사, 화물 중개 서비스, 화물 검사, 계근 및 샘플링 서비스, 화물 수취 및 인수 서비스, 운송 문서 준비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는 화물주를 대리하여 제공되는 것임.

## 참조 문서

### 적용범위

아래 사항은 기본 전기통신 서비스의 규제 기본틀에 관한 정의 및 원칙에 관한 것이다.

### 정의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 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라 함은 다음과 같은 공중전기통신 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a) 하나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해 배타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고,  
그리고
- (b)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설비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기본 전기통신 서비스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업자이다.

- (a)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 (b)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 1. 경쟁 보호장치

### 1.1. 통신 분야에서의 반경쟁적 관행 방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사업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 1.2. 보호장치

1.1.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a)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 (b)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 (c) 다른 서비스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 2. 상호접속

2.1. 본 항은 양허한 분야에 한해, 한 공급자의 이용자들이 다른 공급자의 이용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전기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간 접속에 적용된다.

## 2.2. 상호접속을 위한 요건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망 내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보장된다. 이러한 상호접속은,

- (a) 비차별적 조건 (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그 자신의 동종 서비스 또는 비 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 서비스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요금과 품질로 제공되어야 한다.
- (b) 시의적절하게,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하여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효율로 제공되어야 한다.
- (c) 요청이 있는 경우,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효율을 조건으로 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2.3. 상호접속 협상 절차의 공개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

## 2.4. 상호접속 협정의 투명성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상호접속 제공 지침을 공개하도록 보장한다.

## 2.5. 상호접속의 분쟁해결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서비스 공급자는

- (a) 언제든지, 또는
- (b) 공개적으로 알려진 합리적 기간 후에 상호접속을 위한 적절한 조건 및 요금(이러한 조건 및 요금이 사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분쟁을 합리적인 기간 내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국내기관(5항에 언급된 규제기관 포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3.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의무는, 그것이 당사국에 의하여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 중립적인 방식으로 시행되며 당사국이 규정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부담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 자체로서 반경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4. 허가 기준 공개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a) 모든 허가 기준과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르는 데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그리고

(b) 개별 허가 요건

요청이 있을 때 허가 거부의 사유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5. 독립적인 규제기관

규제기관은 어떠한 기본 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와도 분리되고, 책임지지 아니한다. 규제기관의 결정과 규제기관이 사용하는 절차는 모든 시장 참가자에게 공정해야 한다.

#### 6.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주파수·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는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하되, 특정한 정부 사용 목적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